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 |
|----------|-----|
| 의안 번호 | 403 |
|----------|-----|

2012년 6월 25일
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1년 6월 29일, 김현기 의원 외 9명

나. 회부일자 : 2011년 7월 4일

다. 상정일자 : 제233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2011년 9월 2일 상정, 보류)
제237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2012년 4월 26일 상정, 보류)
제238회 정례회 제2차 건설위원회
(2012년 6월 25일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현기 의원)

가. 제안이유

- 물재생센터는 오·우수(정화조 포함)등 생활하수의 유입과 분뇨처리에 따른 악취발생으로 지역주민들이 기피하는 대표적인 혐오시설임.
- 물재생센터가 설치된 3곳의 자치구 중 성동구와 강서구는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의 규정에 따라 오니처리(분뇨처리 포함) 비용 전액을 면제 받고 있으나, 강남구는 오니처리시설

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분뇨처리시설 미설치구로 분류되어 10%의 가산금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를 형평성에 맞게 조정하며,

- 하수도 사용료 면제 대상을 지역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관련법 개정으로 삭제된 조항을 동 조례에 반영하는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동 조례에 인용된 『하수도법』 26조를 삭제함(안 제10조제1항, 제2항).
- 오니(분뇨)처리 비용 부담의 기준이 되는 “분뇨처리시설”을 “물재생센터”로 수정함(안 제32조제3항).
- 하수도 사용료 면제 요건 중 물재생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밖의 동일생활권역의 경우에도 포함하도록 함(안 제34조제1항제8호).

3. 검토보고요지(수석전문위원 양재대)

■ 제안배경

- 본 안건은 물재생센터가 설치된 3곳의 자치구(성동구, 중랑구, 강남구) 중 강남구만이 분뇨처리시설 미설치구로 분류되어 분뇨처리 수수료 및 10%의 가산금을 부담하고 있어 이를 형평성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하수도 사용료 면제 요건을 물재생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밖의 동일생활권역의 경우에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

가. 「하수도법」 인용조문 삭제(안 제10조제1항, 제2항)

- 현행 조례 제10조제1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하수도법」 제26조 중수도의 설치 근거조항이 2010.6.8일 제정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11.6.9일 시행)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려는 것임.
- 그러나, 이를 삭제할 경우 조례에서 규정한 “중수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삭제보다는 중수도 설치의무의 법적 근거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로 대체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라 사료됨.

나. 분뇨처리수수료 면제 근거인 “분뇨처리시설”을 “물재생센터”로 변경(안 제32조제1항제3호)

- 4개 물재생센터 중 서남, 중량, 탄천물재생센터가 위치한 3개 자치구 중 성동구와 강서구는 관내 물재생센터에 분뇨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현행 조례 제32조제1항제3호1)의 규정에 의해 분뇨처리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데 반해, 탄천물재생센터가 위치한 강남구의 경우는 별도의 분뇨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타 자치구와 동일하게 성동과 강서구의 수수료 면제로 인한 세입손실의 보전 가산금 10%를 포함한 분뇨처리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임.

[표] 서울시내 물재생센터가 위치한 3개 구의 분뇨처리 현황 (2010년 기준)

| 구 분 | 분뇨처리량 | 처리비용(천원) | | | 납부액(천원) |
|-----|------------|-----------|---------|-----------|-----------|
| | | 처리비용 | 가산금 | 계 | |
| 성동구 | 113,981.47 | 438,738 | 43,873 | 482,611 | 전액 면제 |
| 강서구 | 182,191.19 | 701,290 | 70,129 | 771,419 | 전액 면제 |
| 강남구 | 414,909.50 | 1,597,070 | 159,706 | 1,756,776 | 1,756,776 |

- 이에 동 개정안은, 강남구는 비록 별도의 분뇨처리시설은 없으나 공공하수관로를 통해 정화조의 오니(정화조의 침전물을 제외한 상층 월류 오니수)가 생활폐수와 함께 탄천물재생센터로 유입되어 일반하수와 함께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분뇨처리에 해당된다고 보아, 현행 조례의 분뇨처리수수료 면제 근거시설인 “분뇨처리시설”을 “물재생센터”로 변경하여 강남구 역시 분뇨처리수수료 면제대상으로 전환토록 하려는 것으로,

1) 분뇨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각 구청장이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분뇨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의 구청장에 대하여는 분뇨처리수수료를 면제하고 다른 구의 구청장에 대하여는 가산금 10%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당초 분뇨처리시설 소재 자치구의 분뇨처리수수료 면제 취지가 타 자치구 발생분뇨를 반입하여 처리함에 따른, 분뇨 운반차량 동선이나 분뇨처리장의 분뇨 투입·처리과정에서의 발생악취로 인한 지역 주민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측면이었음을 감안 할 때, 비록 탄천물재생센터 내에 별도의 분뇨처리시설은 없으나 하수처리과정에서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과 경제적 손실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 그러나, 이미 현행 조례 제34조제1항제8호2)에서 물재생센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거주 가구들의 하수도사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고, 「하수도법」 제2조에서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로 정의함에 따라, 현재 ‘수거 및 운반’ 과정 없이 공공하수관로를 통해 물재생센터로 유입되어 처리되고 있는 정화조 오니의 경우까지 법정 분뇨로 보기에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사료됨.
- 이는 별도의 분뇨처리시설을 운영하면서 타 자치구인 강남구의 발생분뇨(약 40만톤)를 수용 처리해 주고 있는 난지(81.1%), 서남(18.7%), 중랑(0.2%) 물재생센터와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데,
- 이의 원인은 만일 강남구의 분뇨처리수수료(가산금 10%포함)를 감면할 경우 분뇨처리수수료 손실분이 타 자치구로 전가(22개 자

2)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물재생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거주 가구인 경우 : 면제

치구 각각에 약 12.7%씩 분배됨)되어 현행 가산금 10%가 22.7%로 크게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성동, 강서, 강남구를 제외한 타 자치구의 재정부담 증가에 따른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임.

※ **현행과 개정안의 분뇨처리수수료 가산금 비율 비교 (2010년 기준)([붙임2] 표참조)**

○ 자치구 총처리량 : 3,849,885 ton

※ 성동 처리량 : 113,981 ton, 강서 처리량 : 182,191 ton, 강남 처리량 : 414,910 ton

○ 2010년 처리단가 : 3,849원/ton

○ 자치구 총처리비용(고정비용) : 3,849,885 ton × 3,849원/ton = 14,818백만원

(현행) 강서, 성동 면제 시 ⇒ 가산금 비율 10% 부담 (현행 조례에 의함)

- 타 자치구 총부담액 : 3,553,713 ton(2개구 처리량 제외) × 3,849원/ton × 1.1 = 15,047백만원

(개정안) 강서, 성동, 강남 면제 시 ⇒ 가산금 비율 22.7%로 증가

- 가산금 비율 산출식 : 3,138,803 ton(3개구 처리량 제외) × 3,849원/ton × (1 + 가산금비율)
= 14,818백만원(총처리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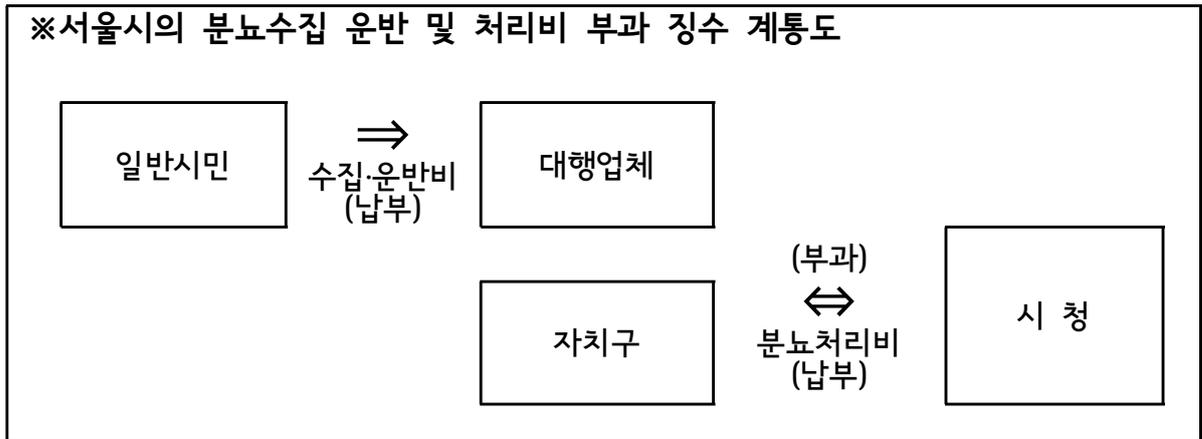
※ **개정안 적용시 분뇨처리수수료 가산금 변동예측**

: 현행 10% -> 개정안 반영시 22.7% (12.7% 증가)

- 참고로, 현재 서울시의 분뇨처리 운영체계를 살펴보면 각 구청이 선정한 대행업체가 시민들로부터 분뇨 수거·운반비를 징수할 뿐, 구청이 대행업체에게 별도로 징수하는 것은 없음.

따라서 물재생센터의 분뇨처리수수료는 시민 부담이 아닌 각 자치구 부담이기 때문에 강남구의 분뇨처리수수료를 면제한다 하더라도 강남구민에게 직접혜택은 없으며 다만 강남구 재정부

담 감소를 통한 간접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것임.



다. 물재생센터 부지경계로부터 300미터 이외 거주 가구 중 동일 생활권역에 대해 하수도사용료 면제 단서규정 신설 (안 제34조 제1항제8호)

- 이 안은 현행 조례의 하수도사용료 감면규정에 따라 물재생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거주 가구에 대해선 전액 면제 하고 있으나, 이들 수혜 가구 이외의 연접 가구 중 동일생활권역으로 판단할 경우 동일하게 하수도사용료를 전액 면제토록 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연접 가구들의 잦은 민원에 따른 대안적 차원으로 해석됨.
- 조례에서 하수도사용료 면제 대상을 물재생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규정한 것은, 유사 기피시설인 자원회수시설에 대해 냄새의 간접영향권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 것으로, 이는 냄새 발원지로부터 냄새가 공기 중에 희석되어 냄새로 인한 불편이 해소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반경 최대 300m로 본 것으로 해석됨.

- 따라서 300m에 대한 법정 취지를 고려할 때, 동일생활권역이라 하더라도 반경 300m를 벗어난 위치에 있다면 냄새로 인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는 것이며, 만일 간접영향권에 대한 경계를 300m 밖의 동일생활권역까지 확대할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4개 물재생센터 뿐만 아니라 4개 자원회수시설까지 확대되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동 개정안으로 인한 과급효과를 감안하여야 할 것임.
- 또한, 개정안에서 ‘동일생활권역’에 대한 정의가 애매하여 어느 범위까지를 동일생활권역으로 볼 것인가가 명확치 않으므로 동일생활권역을 명확히 구분 지을 수 있는 경계기준을 명시하여 만일의 조례 시행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여야 할 것임.
- 참고로, 현행 조례 제34조제2항 단서에 “시장은 도로 등 지역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면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가 이미 설치되어 있어 현재 300m를 벗어났다 하더라도 동일 필지 내에 속하면 감면 대상에 포함하여 감면해 주고 있음.

■ 맺음말

결론적으로 동 개정안의 주요골자 중 분뇨처리수수료 면제를 강남구까지 확대하는 사안의 경우는 타 자치구의 분뇨처리수수료 증가와 연관성을 갖고 있고, 하수도사용료 면제 대상을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외 동일생활권역까지 확대하는 사안은 4개 자원회수시설과도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정에 따른 연계적 과급효과와 이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민원, 법적용의 형평성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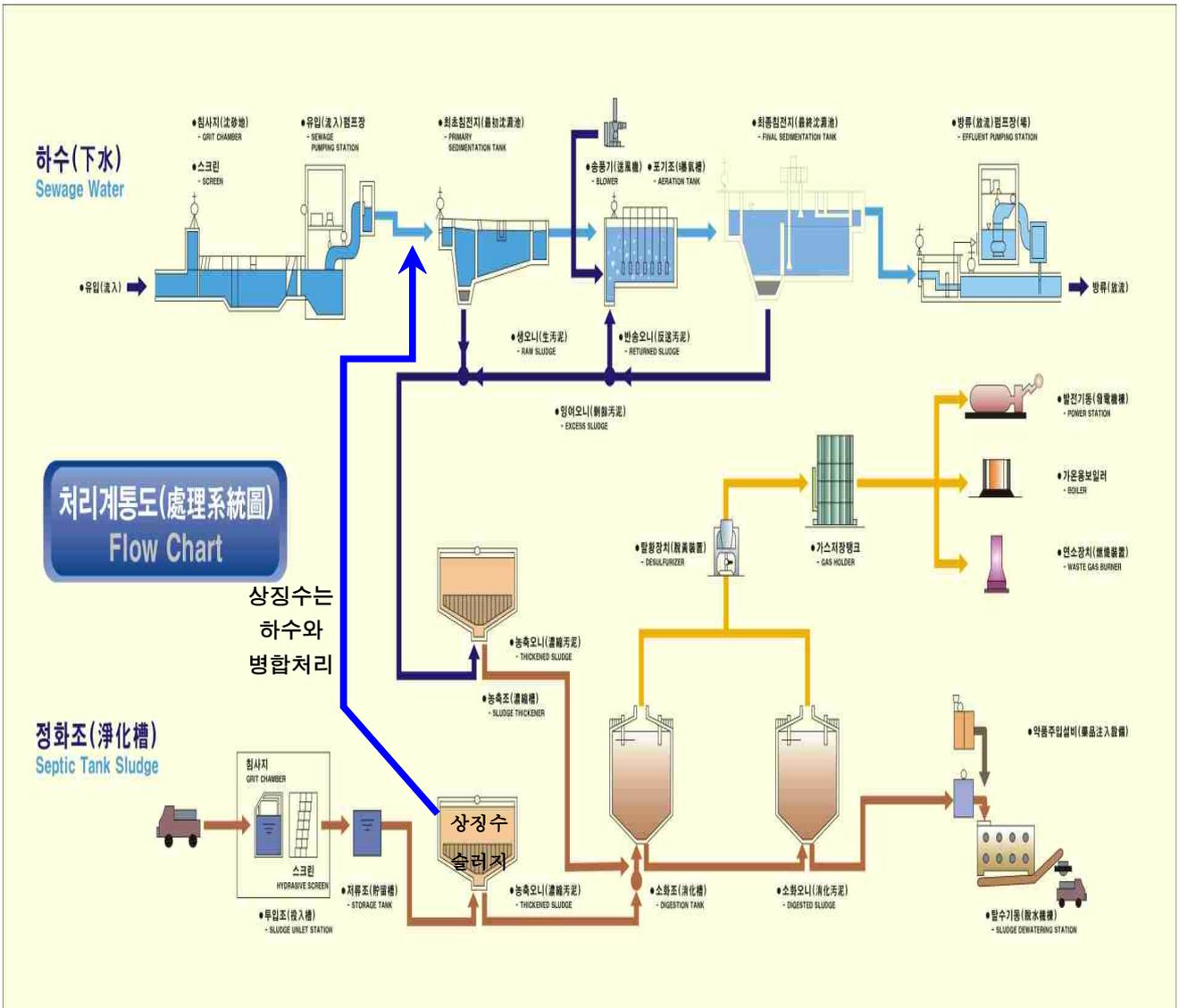
- [붙임] 1. 물재생센터 현황 및 처리계통도
2. 자치구별 분뇨처리수수료 부담현황
3. 물재생센터별 분뇨처리장 전경사진

[붙임 1] 물재생센터 현황 및 처리계통도

1. 물재생센터 현황

| 구분 | 계 | 중 랑 | 난 지 | 서 남 | 탄 천 | |
|-------|----|------------|---|-----------|-----------|----------|
| 위 치 | - | 성동구 송정동 | 고양시 현천동 | 강서구 마곡동 | 강남구 일원동 | |
| 시설 용량 | 하수 | 581만톤/일 | 171만톤/일 | 100만톤/일 | 200만톤/일 | 110만톤/일 |
| | 분뇨 | 10,500kl/일 | 4,000kl/일 | 4,500kl/일 | 2,000kl/일 | - |
| 처리 방법 | 하수 | - | 표준활성슬러지법 (A2O공법 46만톤/일) | 표준활성슬러지법 | 표준활성슬러지법 | 표준활성슬러지법 |
| | 분뇨 | - | 전처리(협잡물제거 및 고액분리)후 물재생센터에 이송하여 하수와 병합처리 | | | - |

2. 수처리 계통도



[붙임 2] 자치구별 분뇨처리수수료 부담현황

(단위 : kl, 천원)

| 구분 | 2008년 | | 2009년 | | 2010년 | | 비고 |
|-----|-----------|------------|-----------|------------|-----------|------------|-------------|
| | 처리량 | 부담금 | 처리량 | 부담금 | 처리량 | 부담금 | |
| 계 | 3,773,233 | 15,055,595 | 3,849,995 | 16,253,267 | 3,849,885 | 15,046,844 | |
| 종로 | 121,150 | 500,378 | 127,077 | 581,350 | 130,905 | 554,267 | |
| 중구 | 139,482 | 576,108 | 147,161 | 673,232 | 146,123 | 618,701 | |
| 용산 | 135,981 | 563,030 | 140,907 | 644,619 | 137,246 | 581,115 | |
| 성동 | 116,278 | 264,529 | 117,093 | - | 113,981 | - | (08.7.31까지) |
| 광진 | 136,655 | 564,755 | 139,451 | 637,960 | 136,608 | 578,415 | |
| 동대문 | 131,691 | 543,664 | 142,855 | 653,531 | 138,748 | 587,475 | |
| 중랑 | 108,237 | 447,251 | 108,713 | 497,338 | 109,948 | 465,531 | |
| 성북 | 129,740 | 535,501 | 135,992 | 622,136 | 137,942 | 584,061 | |
| 강북 | 85,287 | 351,800 | 84,559 | 386,838 | 81,680 | 345,843 | |
| 도봉 | 77,410 | 319,591 | 75,601 | 345,860 | 74,702 | 316,299 | |
| 노원 | 82,891 | 341,510 | 86,252 | 394,584 | 84,773 | 358,938 | |
| 은평 | 145,653 | 602,070 | 147,690 | 675,452 | 143,812 | 608,916 | |
| 서대문 | 109,268 | 451,085 | 108,368 | 495,760 | 106,578 | 451,263 | |
| 마포 | 163,324 | 674,392 | 164,894 | 754,355 | 161,049 | 681,901 | |
| 양천 | 145,977 | 603,074 | 147,993 | 677,035 | 152,200 | 644,432 | |
| 강서 | 174,694 | 410,190 | 180,068 | - | 182,191 | - | (08.7.31까지) |
| 구로 | 175,884 | 725,901 | 178,014 | 814,376 | 177,993 | 753,643 | |
| 금천 | 95,558 | 394,127 | 97,983 | 448,252 | 101,790 | 430,991 | |
| 영등포 | 198,658 | 821,764 | 203,337 | 930,223 | 204,573 | 866,186 | |
| 동작 | 122,311 | 504,864 | 124,184 | 568,117 | 122,927 | 520,490 | |
| 관악 | 178,645 | 738,756 | 176,564 | 807,741 | 173,200 | 733,350 | |
| 서초 | 250,605 | 1,033,450 | 259,427 | 1,186,823 | 265,122 | 1,122,558 | |
| 강남 | 402,750 | 1,663,839 | 402,622 | 1,841,912 | 414,910 | 1,756,777 | |
| 송파 | 209,080 | 862,744 | 213,837 | 978,259 | 211,949 | 897,416 | |
| 강동 | 136,022 | 561,210 | 139,353 | 637,513 | 138,937 | 588,276 | |

※ '08년 단가 3,963원, '09년 처리단가 4,159원, '10년 처리단가 3,849원

[붙임 3] 물재생센터별 분뇨처리장 전경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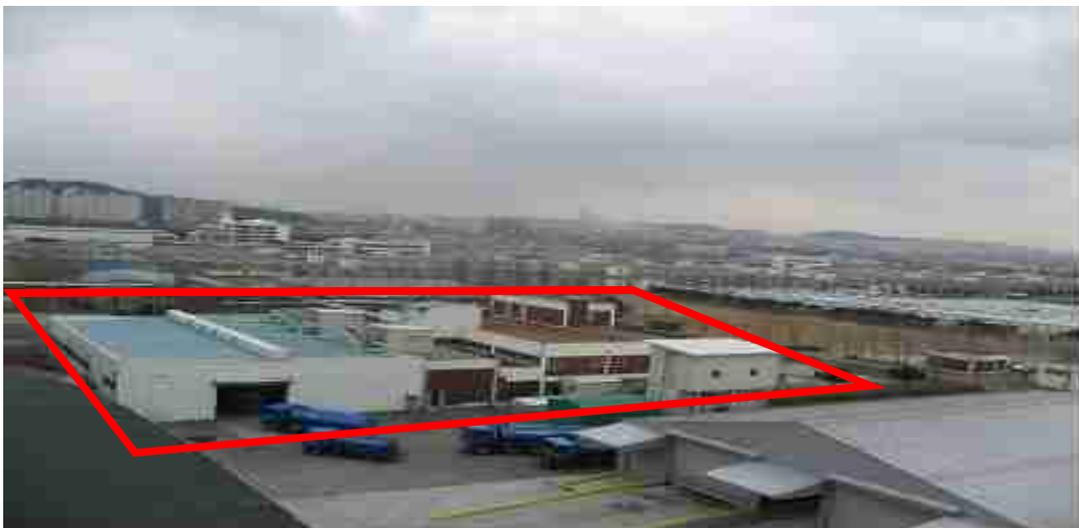
1. 종량분뇨처리장 : 오른쪽으로 관련 건물이 이어짐



2. 난지분뇨처리장 : 왼쪽으로 관련 건물이 이어짐



3. 서남분뇨처리장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재석위원 전원 찬성)

8.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 |
|----------|-----------|
| 의안 번호 | 관련 403 |
|----------|-----------|

제안년월일 : 2012년 6월 25일
제안자 : 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강남구에 위치한 탄천물재생센터의 경우에는 공공하수관로를 통해 정화조의 오니(정화조의 침전물을 제외한 상층 월류 오니수) 일부가 생활폐수와 함께 유입되고 있고 타 물재생센터와 마찬가지로 악취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분뇨처리수수료와 가산금 10% 중 타 자치구로 전가금이 미미한 가산금 10%만 감면하는 것으로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분뇨처리시설이 없는 자치구 중 강남구에 대해서는 가산금 10%를 제외하도록 함. (안 제32조제1항제3호)
- 나. 하수도사용료 감면 대상 중 물재생센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 거주 가구에 대한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함. (안 제34조제1항제8호)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를 삭제한다.

안 제32조제1항제3호 중 “물재생센터가”를 “분뇨처리시설이”로 하며, “다른 구”를 “다른 구(강남구는 제외한다.)”로 한다.

안 제34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물재생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거주 가구인 경우 : 면제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2조제1항제3호의 개정사항은 2012년 9월 부과 분부터 적용한다.

수정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수 정 안 |
|--|--|--|
| <p>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p> <p>제10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① 법 제26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도면과 서류를 구비하여 미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1.~4. (생략)</p> <p>② 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중수도의 설치통보를 받은 때에는 시설을 확인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분에 대해서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p> <p>제32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생략)</p> <p>1.~2. (생략)</p> <p>3. 분뇨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각 구청장이 시장에게 납부하여야한다. 다만, 분뇨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의 구청장에 대하여는 분뇨처리수수료를 면제하고 다른 구의 구청장에 대하여는 가산금 10%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제34조(감면) ①</p> <p>1.~7.(생략)</p> | <p>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p> <p>제10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① 중수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도면과 서류를 구비하여 미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1.~4. (현행과 같음)</p> <p>② 구청장은 중수도의 설치통보를 받은 때에는 시설을 확인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분에 대해서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p> <p>제32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현행과 같음)</p> <p>1.~2. (현행과 같음)</p> <p>3.물재생센터가.....</p> <p>제34조(감면) ①</p> <p>1.~7.(현행과 같음)</p> | <p>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p> <p>제10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삭제》 (2012.5.22 부칙개정)</p> <p>제32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현행과 같음)</p> <p>1.~2. (현행과 같음)</p> <p>3.분뇨처리시설이..... 다른 구 (강남구는 제외한다.)의 구청장에 대하여는 가산금 10%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제34조(감면) ①</p> <p>1.~7.(현행과 같음)</p>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를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로 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중 “다른 구”를 “다른 구(강남구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2조제1항제3호의 개정사항은 2012년 9월 부과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p> <p>제32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생략)</p> <p>1.~2. (생략)</p> <p>3. 분뇨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각 구청장이 시장에게 납부하여야한다, 다만, 분뇨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의 구청장에 대하여는 분뇨처리수수료를 면제하고 <u>다른 구</u>의 구청장에 대하여는 가산금 10%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p> | <p>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p> <p>제32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현행과 같음)</p> <p>1.~2. (현행과 같음)</p> <p>3.</p> <p>..... <u>다른 구(강남구는 제외한다.)</u></p> <p>.....</p> |